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정보 뉴스피드



2019년 9월호, 광주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농·축·수산물 안전뉴스

■ 내년 7월부터 유통단계 닭·오리 고기, 계란도 이력관리

○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가 현행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내년 7월부터 닭·오리 고기, 계란까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그동안 이력관리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서 안전·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유통 과정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안전·품질에 문제 있는 가금(가금산)류의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 고기, 계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와 유통단계('20.7월부터)로 구분해 시행된다. 사육단계는 부화장, 농장 등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통단계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 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 정보 신고가 의무화돼 농관원이 전국 5만7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 농관원 관계자는 “가금류 이력관리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신규 도입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정착률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저널, 09.16.>

■ 식용란 미생물 검사항목에 살모넬라균 2종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하는 등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 규정은 지난해 식중독 의심환자가 먹은 케이크에서 톰슨 혈청형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와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Samonella Typhimurium 과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했다.

<식품저널, 09.11.>

**■ 축산물 이물방지 조치 성실히
수행하면 행정처분 감경**

- 앞으로 축산물의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한 영업자가 이물 발생 방지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면,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 가공품을 유형별로 검사하는 경우 해당 유형별 품목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와 12개를 초과한 경우로 구분해 그 검사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면 모든 품목의 50%(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 품목 포함)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한다.
- 축산물의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한 영업자가 이물 발생 방지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을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포함)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과 직원교육 등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가 구비한 이물 검출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 혼입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면 이물 혼입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처분하도록 했다.
- 도축장 내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 받은 가축만 도축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강화했으며,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에게 종이 형태 도축검사증명서 외에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도축검사증명서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번 개정령은 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며, 단 유형별 검사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저널, 09.04.>

**■ 방사능 검출 반송 이력 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한다.**

-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가 방사능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1Bq/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대상식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등 가공식품 10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식품첨가물 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08.21.>

○ 도축장 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가축만 도축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강화(별표 12 제2호바목)

○ 축산물운반업 영업자가 종이 형태의 도축검사증명서 외에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도축검사증명서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3 제1호라목)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개정(09.16.)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
-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

* 기타 자세한 제·개정 사항은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제·개정 소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09.04.)

- 축산물가공품을 유형별로 검사하는 경우 해당 유형별 품목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와 12개를 초과한 경우로 구분하여 세부 검사기준을 정함(별표 5 제1호가목(2))
-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한 영업자가 이물 발생 방지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물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별표 11 제1호파목)

달걀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달걀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0823 M3FDS 2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2019.8.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란일자 : 산란일이 8월23일이면 0823로 표시

생산자 고유번호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www.foodsafetykorea.go.kr)

'냉장보관' 표시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분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전화 044-200-7773 / 팩스 044-200-7949